

수출바우처사업 정산가이드 (2021년)

K O T R A

[목차]

| | |
|-----------------------------------|----|
| I. 정의 | 1 |
| II. 목적 | 1 |
| III.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관리지침과의 관계 | 1 |
| IV. 수행기관 정산 기준과의 관계 | 1 |
| V. 적용 시점 | 1 |
| VI. 참여기업의 수행기관 서비스 이용 관련 지침 | 2 |
| 1. 적용범위 | 2 |
| 2. 공통 적용 지침 | 4 |
| 3. 서비스 대분류별 지침 | 8 |
| 가. 조사/일반 컨설팅 | 8 |
| 나. 통번역 | 8 |
| 다. 역량강화교육 | 8 |
| 라. 특허/지재권/시험 | 9 |
| 마. 서류대행/ 현지등록/환보험 | 10 |
| 바. 홍보/광고 | 10 |
| 사. 브랜드 개발·관리 | 11 |
| 아. 전시회/행사/해외영업지원 | 11 |
| 자. 법무·세무·회계컨설팅 | 13 |
| 차. 디자인개발 | 13 |
| 카. 홍보동영상 | 14 |
| 타. 해외규격인증 | 14 |
| 파. 국제운송 | 15 |
| VII. 참여기업의 사후개별정산 관련 지침 | 17 |
| 1. 적용 범위 | 17 |
| 2. 유형별 정산 지침 | 17 |
| 가. 해외전시회 개별 참가 | 17 |
| 나. 해외규격인증 취득 | 19 |
| 다. 해외홍보/광고 | 19 |
| 라. 항공임 지원 | 20 |
| 3. 유의사항 | 21 |

I. 정의

- 가. 'KOTRA 참여기업'은 KOTRA가 운영기관인 통합형 바우처사업에 선정된 참여기업을 말한다.
- 나. 'KOTRA 운영기관'은 'KOTRA 참여기업'을 선정한 KOTRA 부서를 말한다.
- 다. 'KOTRA 관리기관'은 바우처사업 관리기관 역할을 담당하는 KOTRA 부서를 말한다.
- 라. 기타 본 지침에 사용된 용어의 정의는 관계부처 합동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관리지침" 상의 정의를 따른다.

II. 목적

① KOTRA 참여기업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수행기관이 KOTRA 운영기관에 정산을 요청하거나 ② KOTRA 참여기업이 KOTRA 운영기관에 사후 개별 정산을 요청하는 경우 KOTRA 운영기관, KOTRA 참여기업, 수행기관의 정산 기준으로 활용한다.

III.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관리지침과의 관계

관리지침과 본 지침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관리지침을 우선 적용한다.

IV. 수행기관 정산 기준과의 관계

KOTRA가 수행기관으로서 KOTRA 참여기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동 지침을 우선 적용하며, 동 지침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KOTRA 내부 예산운영 및 정산지침 등을 따른다. KOTRA가 수행기관으로서他の기관 운영사업 참여기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운영기관의 정산지침을 우선 적용하며, 해당 지침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KOTRA 내부 예산운영 및 정산지침 등을 따른다.

V. 적용 시점

본 지침은 수출바우처포털(www.수출바우처.com)상 공고일(21.06.14.부)부터 적용한다. 단, 지침개정 공고일 이전 계약 체결한 경우 KOTRA 운영기관과 협의 후 이전 기준에 따라 정산할 수 있다.

VI. 참여기업의 수행기관 서비스 이용 관련 지침

1. 적용 범위

- 참여기업이 수행기관으로부터 아래 표의 12개 대분류에 속하는 서비스를 제공 받는 경우에 적용한다.

<대상 서비스(대분류 기준)>

| 연번 | 대분류 | 정의 | 내용(예시) |
|----|-----------------|--|--|
| 1 | 조사/일반 컨설팅 | 정보 조사 및 법무·세무·회계를 제외한 수출관련 일반 컨설팅 지원 | 파트너·바이어·원부자재공급선 발굴조사, 해외시장조사, 소비자 리서치, 경쟁제품 동향조사, 해외 기업 신용 및 기업 실태 조사, 바이어DB 타겟 마케팅, 경영 멘토링, 기업 중장기 성장전략수립, 해외수출 전략수립 및 이행을 위한 포괄적 지원, 해외진출 및 마케팅전략 컨설팅 등 조사/일반 컨설팅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
| 2 | 통번역 | 수출을 위한 기업의 활동에 필요한 외국어 통번역 서비스 지원 | 계약/법률 문서, 소프트웨어콘텐츠, 게임/모바일App 콘텐츠, 비즈니스/기술문서, 홈페이지 번역 등 통번역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단, 통·번역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로 제한함 |
| 3 | 역량강화 교육 | 수출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제공 및 지원 | 무역실무, 글로벌마케팅 양성, 비즈니스 회화, 전략시장 진출, 중국시장 e-러닝, 내부역량강화, 전략물자, CP 실무자 과정, 글로벌 비즈니스 전문인력 육성, 해외 시장 개척과정 교육,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 과정,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방안 등 수출 역량강화 교육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
| 4 | 특허/지재권/ 시험 | 특허·지재권 취득, 시험 대행 등 해당 분야 전문 서비스 지원 | 현지 시험·인허가, 지식재산권 등록, 특허·인증·시험·수출 IP 전략 컨설팅, 지재권 분쟁지원, AEO 인증획득지원 등 특허/지재권/시험 관련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SMETA 획득지원 |
| 5 | 서류대행/ 현지등록/ 환보협 | 수출·무역·현지진출 관련 필요 서류 작성 대행 및 현지 등록, 환보협 서비스 지원 | 계약서 작성(지불조건 포함), 통관/선적 필요 서류 작성, 결제관련 서류 작성, FTA원산지 관련 서류 작성, 무역자동화 등 서류 대행 및 현지법인·지사·대표처 등록, 현지 입점대행, 공공조달 시장 진출지원, 환보협 등 서류대행/현지등록/환보협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
| 6 | 홍보/광고 | 기업/제품/브랜드의 해외 마케팅을 위한 홍보 및 광고 지원 | 기업/제품/브랜드 관련 TV·PPL, 신문·잡지 홍보/광고, SNS·검색엔진 마케팅, 바이럴 마케팅, IMC 마케팅 등 광고 매체를 활용한 홍보/광고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
| 7 | 브랜드 개발·관리 | 수출브랜드의 개발과 관리를 위한 마케팅 지원 | 수출브랜드, 네이밍, 온/오프라인 제품매뉴얼 제작, 브랜드 정품인증, 위변조방지 등 브랜드개발/관리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
| 8 | 전시회/행사/ 해외영업지원 | 전시회/상담회/세미나 등 수출관련 행사 기획·지원 및 해외영업지원을 통한 수출 지원 | 국내개최 국제전시회 참가, 현지 바이어 매칭 상담회/세미나/제품시연회, 해외바이어 국내초청 미팅/설명회/세미나, 해외전시회 사전·사후 지원, 해외시장 산업설명회, 판촉전, 해외전시회 참가비용 사후정산, 세일즈랩, 해외프로젝트 수주지원 등 전시회/행사/해외영업지원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

| 연번 | 대분류 | 정의 | 내용(예시) |
|----|-----------------|---|--|
| 9 | 법무·세무·회계 컨설팅 | 해외진출을 위한 법무·세무·회계 관련 전문 컨설팅 지원 | 회계감사, 세무조사, 세무자문, 법률자문, 법인설립, 해외현지 클레임 해결지원, 해외법인 설립지원 등 수출목적의 법무·세무·회계 컨설팅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
| 10 | 디자인 개발 | 해외 진출에 필요한 외국어 디자인 개발 지원 | 외국어 종이/전자 카탈로그 제작, 외국어 포장디자인, 외국어 홈페이지(반응형), 모바일용 앱, 해외 온라인 쇼핑몰 상품페이지, 제품디자인, CI 및 BI 개발 등 |
| 11 | 홍보 동영상 | 해외 진출에 필요한 외국어 홍보동영상 개발 지원 | 외국어 홍보 동영상 제작 등 |
| 12 | 해외규격인증 | 해외규격인증 취득을 위한 시험 심사인증 및 인증대행 컨설팅 등 해당 분야 전문 서비스지원 | 해외 인증비용 사후정산, 위생, 할랄 등 해외 인증 취득 및 등록 등 해외규격인증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단, 해외규격에 없는 일반 시험분야 제외 |
| 13 | 국제운송 | 수출자가 부담하는 국제 운송비 | 수출자가 부담하는 국제운송료(해운·항공) 및 보험료 (국내문임, 취급수수료 및 도착국 발생비용, 세금은 정산 제외) |

2. 공통 적용 지침

가. 정산 가능 범위의 사전 확인 의무

- 수행기관은 특정 서비스 또는 특정 서비스 세부 항목의 정산 가능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반드시 KOTRA 운영기관에 사전 확인하여야 한다.

<KOTRA 운영 바우처 사업 및 운영기관 (2021.2.1.기준)>

| 사업명 | KOTRA 운영기관 |
|-----------------------|---|
| 소재 · 부품 · 장비 선도 기업 육성 | 소재부품팀(확대), 수출바우처팀(준비), 빅데이터팀(디지털특화) |
| 소비재선도기업 육성 | 소비재산업팀(확대), 수출바우처팀(준비) |
| 서비스선도기업 육성 | 지식서비스팀 |
| 중견 글로벌 지원 사업 | 강소중견기업팀 |
| 경기도 글로벌 히트상품 | KOTRA 경기지원단 |
| 광주시 기업맞춤형 수출성공패키지 | KOTRA 광주전남지원단 |
| 충북 수출상품 창출기업 지원 | KOTRA 충북지원단 |

나. 정산 원칙

- 수행기관은 참여기업에 서비스 제공을 완료한 후 바우처를 정산받기 위해 운영기관에 사업결과보고서 및 정산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정산을 신청할 수 있다. (先 집행 後 정산 원칙)

다. 정산이 불가능한 서비스 세부 항목

- 참여기업 인건비 및 제경비(예시 : 기업 통신비), 참여기업 출장비(예시 : 항공임¹⁾, 숙박비 등), 자산 취득비, 샘플 제작비, 기념품 제작비, 선물비 등 생산비용은 서비스 세부 항목으로서 제공한 후 정산할 수 없다.
- 단, 참여기업을 포함하여 5개사 이상이 참가하는 ‘역량강화교류’ 분류 내 단체 해외 연수 서비스의 경우, 수행기관이 일괄 구매·집행 하는 항공임, 숙박비는 정산할 수 있다.
- 해외 송금 시 송금수수료, 환전수수료 등 각종 수수료는 정산할 수 없다.

1) [전시회/행사/해외영업] 분야에 등록된 전시회 참가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후 해당 전시회에 참가하기 위해 소진된 항공임을 참여기업은 사후정산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VII. 라. 항공임 사후정산 참고]

라. 해외 현지 발생 세금의 정산

- 수행기관이 서비스를 수행함에 있어 해외 기관기업에 일부를 위탁하여 진행함에 따라 부가가치세 등 현지 세금이 발생하는 경우 정산할 수 있다. 단, 현지법에 따라 해당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경우는 정산할 수 없으며, 수행기관은 정산 요청하는 해외 납부 세금에 대해 환급받지 않았다는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별지 제7-1호 참조]

마. 이중(二重) 지원의 금지

- 특정 서비스에 대해 참여기업이 자체 지원을 포함한 다른 국고사업을 통해 이미 비용지원을 받은 경우, 참여기업은 기업 분담분에 대해 수행기관과 별도 서비스 협약을 체결하여 바우처를 사용할 수 없다.
- 이중 지원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참여기업 및 수행기관은 반드시 KOTRA 운영기관에 사전 확인하여야 한다.

바. 공통 제출 증빙

- 수행기관은 KOTRA 운영기관에 정산을 요청할 경우 아래의 증빙을 제출해야하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시 정산이 거절될 수 있다.
 - 결과 보고서 [별지 제1호 참조]
 - 세금 계산서*
- *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한 해외 수행기관은 계좌정보(예금주, 예금주 주소, SWIFT CODE, 계좌번호, 은행명, 은행주소 등)가 명기된 인보이스 발행
- 참여기업의 부가세 입금* 확인증
 - * 부가세 입금은 계좌송금만 인정(카드결제, 현찰거래 불가)
- 세부 지출 항목이 명시된 인보이스
- 해외 송금 시 적용환율 필수 기재 (송금증에 적용환율이 표기된 경우 표기환율 적용, 표기돼 있지 않은 경우 송금일 적용환율 캡쳐화면 필수 제출)
- 카드결제, 계좌이체 등 지급수단*에 맞는 지출증빙 서류
 - * 지급수단으로 무통장입금, 현금지급 인정 불가
- 기타 서비스 대분류별로 KOTRA 운영기관이 요청하는 서류

사. 선금 신청

- 관리지침 제27조 제5항에 따라 서비스 공급가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고 서비스 계약기간이 2개월 이상인 경우, 참여기업의 동의하에 공급가액의 50%까지 선금으로 요청할 수 있다.
- 선금을 요청하는 경우 아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시 선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다. [자료실 (선금신청 안내문) 참조]
 - 이행보증보험증권 2종(KOTRA용, 참여기업용)
 - 선금세금계산서
 - 부가세 입금확인증
 - 입금통장사본 제출

아. 과업 범위의 사전 명시

- 모든 서비스는 협약 완료 이전에 과업 범위를 서비스 신청내역, 특약 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단, 서비스 메뉴판의 내용과 과업범위가 일치하여 부가 명시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는 별도 명시가 불요하다.

자. KOTRA 운영기관의 서비스 이용범위 조정

- KOTRA 운영기관은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 참여기업의 서비스 이용 범위(대분류, 세부유형, 금액한도 등)를 조정할 수 있다.
- 상기 조정 내역은 KOTRA 운영기관 - 참여기업 간 협약서에 명시되어야 한다.

차. 서비스 개시 및 정산 요청 가능 시점

- 수행기관은 반드시 바우처 시스템을 통해 참여기업과 서비스 협약을 체결한 후 서비스를 개시하여야 하며, 서비스 제공 후 참여기업이 서비스 완료 확인을 한 경우에 한하여 정산을 요청할 수 있다.²⁾

카. 해외민간네트워크(국외유형) 정산 원칙

- 인보이스 발행 시 명시한 해외 계좌정보 외의 기타 국내 계좌로 정산 요청 시 인정 불가
- 해외민간네트워크의 국내 지사*가 아닌 에이전트, 유관업체에서 수행한 경우 인정 불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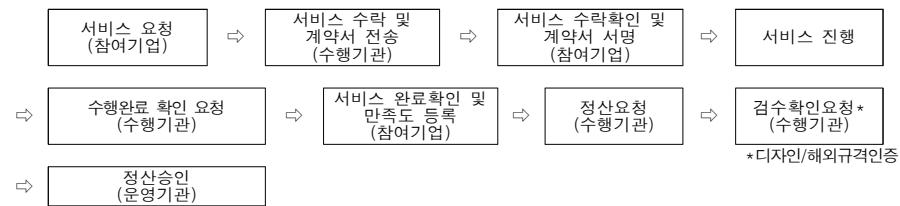
2) 단, 해외규격인증은 예외적으로 시험성적서, 심사보고서, 인증서의 발급일이 참여기업 협약기간 내인 경우 협약 기간 전 서비스 개시가 되었더라도 정산할 수 있으나,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 정산 요청 전 가능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 * 국내 지사에서 수행한 경우 해외민간네트워크와 동 지사와의 관계 증명서류 필수 제출(현지 법인등록증, 주거래은행의 해외직접투자신고서 및 주거래은행의 해외투자계획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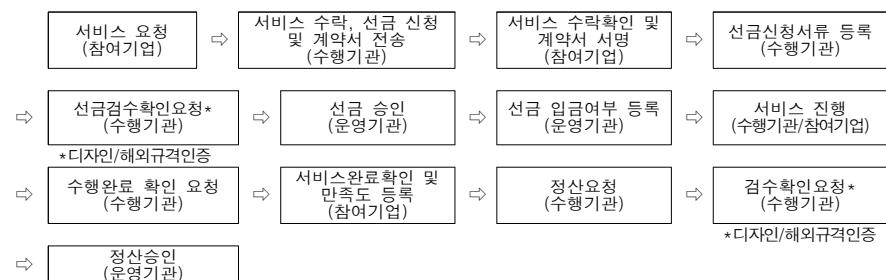
- 해외민간네트워크(국외유형) 대금 송금 시, 서비스계약금액(원화기준)에 정산 시점 공사 내부 집행환율을 적용하여 송금액을 확정
 - KOTRA 본사에서 해외무역관으로 상기 확정금액 전도 후 해외무역관에서 해외민간네트워크로 현지 송금함
 - 서비스 계약 체결 전, 송금 관련 기타 세부사항은 KOTRA 운영부서와 협의 후 확정한다. (단, 내부 집행환율 및 해외무역관을 통한 정산 원칙 준수 필수)

타. 정산 절차

○ 선금이 없는 경우



○ 선금이 있는 경우



3. 서비스 대분류별 지침

가. 조사/일반 컨설팅

| | |
|------------------|--|
| 정산 가능 서비스 및 지원항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기업에게 해외 시장·제품·기업·전략·법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수행하는 조사 및 컨설팅 활동 - 시장·제품·기업·전략·법규 정보를 확보하기 위한 현지기업 접촉 및 상담 활동 - 시장·제품·기업·전략·법규 정보를 확보하기 위한 해외시장 조사 자료 구매 - 위 서비스 결과물 제공을 위해 필요한 번역 활동 |
| 정산 불가 항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컨설팅 활동으로 볼 수 없는 직접비용 (인증비, 심사비, 설립비용, 소송비 등) - 수행기관과 참여기업간 중복된 컨설팅 서비스 존재 시, 보고서의 내용이 동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인용된 내용에 출처가 없거나 표절*로 의심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카피킬러로 표절검사 시 6어절 기준 표절률이 20% 이상인 경우, 운영기관에서 정산을 거절할 수 있다. - 조사·컨설팅 서비스가 수반되지 않는 단순 자료 구매 |
| 추가 증빙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컨설팅 보고서 등 서비스 수행결과물 |

나. 통번역

| | |
|------------------|---|
| 정산 가능 서비스 및 지원항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문/외국어 문서의 통번역 - 해외기업 상담 관련 해외 및 국내 통번역 서비스 - 통번역사 신분증 - 문서 통번역의 경우, 결과보고 시 원문과 번역문을 모두 제출하여야 함 - 행사 중 통역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통역활용 사진 및 행사소개자료 - 직접 고용되어 있는 통번역사가 아닌 경우 단기 용역계약서 첨부 |
| 추가 증빙 | |

다. 역량강화 교육

| | |
|------------------|---|
| 정산 가능 서비스 및 지원항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기업 임직원의 수출 및 해외진출 역량 강화에 필요 한 것으로 인정되는 교육 및 국내외 연수 서비스 |
| 정산 불가 항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기업이 교육 및 연수에 참가하기 위해 개별적으로 구매·집행하는 항공임, 숙박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 5개사 이상의 단체 해외 연수프로그램의 경우 수행기관이 일괄 구매·집행하는 항공임, 숙박비는 정산 가능)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사, 협력사 등 참여기업의 사업자등록번호와 상이한 업체 임직원의 교육비용 - 교육비 환급과정의 환급대상액 |
| 추가 증빙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 안내자료 - 교육 이수확인증 또는 교육 참가확인서 - 4대보험 납입증명서(고용, 산재, 국민연금, 건강보험 중 택일) |

라. 특허/지재권/시험

| | |
|------------------|---|
| 정산 가능 서비스 및 지원항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진출 제품에 대한 해외상표 등록, 해외 실용신안 및 해외 특허 등 지적재산권 등록, 현지 시험·인허가·연장 서비스 - 지재권 출원 및 등록관련 절차 대행비용, 컨설팅비용, 관납료 등* - 참여기업이 법인인 경우 법인 명의(대표자 또는 소속직원 개인 명의는 불가능) 지재권에 한해 지원 가능 - 참여기업이 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 명의 지재권에 한해 지원 가능 <p>* 단, 계약 시 산출내역에 포함되는 내용 중 협약기간 내 완료된 건에 한해 지원 가능 (예시 : '출원 → 심사 → 등록' 절차 중 심사까지 완료된 경우 등록 비용 지원 불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 서비스 결과물 제공을 위해 필요한 번역 활동 ○ SMETA 획득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진출 시 요구되는 SMETA 인증에 필요한 신규심사(Initial), 확인심사(Follow-up), 컨설팅, 개선심사(Re-Audit) 등 비용 지원 - 신규심사 비용을 지원받은 후 Non-Compliance 및 Observation 항목 발생으로 확인심사를 진행하는 경우도 지원 가능 - 참여기업 협약기간 내 심사가 완료되어 감사보고서가 인증기관(SEDEX)의 시스템에 등록된 경우에 한해 지원 <p>※ SMETA(Sedex Members Ethical Trade Audit) : 공급자가 노사문제, 환경보호 등의 측면에서 윤리 경영을 하는지 제3기관에게 심사를 받는 감사제도</p>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 지자체 등의 지재권등록 지원 관련 사업과 중복 지원받은 경우 - 권리 양수도 및 양수 지재권 관련 비용 - 출원인과 등록인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 - 공동출원 및 공동소유에 해당하는 경우 - 행정심판, 소송 관련 비용 |
| 정산 불가 항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적재산권 증빙서류(지재권 출원 또는 등록증, 실용신안 등) |
| 추가 증빙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적재산권 증빙서류(지재권 출원 또는 등록증, 실용신안 등) |

마. 서류대행/현지등록/환보 협

| | |
|------------------|--|
| 정산 가능 서비스 및 지원항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관련 서류대행 및 현지등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서 작성 대행 등 컨설팅 - 통관/선적 필요서류, 결제 관련서류, 수출물류 서류 작성 컨설팅 - 무역자동화, 사후관리 대행 - FTA 원산지 관련 서류 - 현지법인·지사·대표처 등록 등 현지등록 대행 ○ 신용인증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신용등급조회 (영문보고서 발급) 서비스 ○ 현지 입점대행 및 공공조달 시장 진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지 입점을 위한 서류준비, 신청 등 대행 - 공공조달 낙찰자격 유지를 위한 관납수수료* 등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관납료 대납 단독으로는 정산 불가하며, 공공조달 입찰 과정 대행의 일부 항목으로 정산 가능 |
| 정산 불가 항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용 신용등급 조회 |
| 추가 증빙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수행성과물 |

바. 홍보/광고

| | |
|------------------|--|
| 정산 가능 서비스 및 지원항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V·신문·잡지·PPL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 TV, 신문, 전문 잡지, 정기간행물 등에 광고 게재 비용 * 해외 전문 잡지 및 간행물의 ISSN(국제표준연속간행물번호)가 등록된 경우 지원 - 해외 고객 및 시청자를 대상으로 한 공중파 및 웹드라마 활용 PPL 비용 ○ SNS·검색엔진마케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NS 및 포털사이트 배너광고 - 해외 B2C, B2B 사이트 등록비 ○ 온라인 쇼핑몰 입점 마케팅 ○ 해외 인플루언서 마케팅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매체 광고비 - 온라인 쇼핑몰 입점에 소요되는 물품 운송비 - 국내외에서 개최되는 행사 관련 바이어 초청 비용, 장소임차비, 장치비, 물품운송비 등 - 홍보 영상 제작비용은 지원 불가 |
| 정산 불가 항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과보고서 [별지 제8-1호 참조] - 홍보/광고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광고 사본, 영상녹화물, SNS·검색엔진 마케팅 이용 결과 리포트 등 홍보/광고가 실제로 이뤄졌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자료 |
| 추가 증빙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 브랜드 개발·관리

| | |
|------------------|---|
| 정산 가능 서비스 및 지원항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브랜드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시장진출에 필요한 기업 및 제품 브랜드 개발비 ○ 제품매뉴얼 제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매뉴얼 제작비 ○ 정품인증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품 인증 라벨 부착, 전산 솔루션 정품인증, 위변조 방지 라벨 제작비, 외국어 랜딩페이지 제작비 |
| 정산 불가 항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쇄비 - 한국어 매뉴얼 제작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어/한국어 병용 제작 시 정산 기능하나(부분정산 포함) 외국어 비중이 현저히 낮을 경우 정산불가 - BI·CI 디자인개발(로고개발 등) |
| 추가 증빙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수행성과물 |

아. 전시회/행사/해외영업지원

| | |
|------------------|--|
| 정산 가능 서비스 및 지원항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시회 참가 지원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5px;"> UFI 및 한국전시산업진흥회 국제인증 전시회 여부 확인 경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FI 인증전시회(x), 한국전시산업진흥회 인증전시회(x) → 국제인증이여야 함 <p>① UFI 국제인증 : ufi.org 접속 → 메인화면 하단 “Events Approved by UFI being held today” 배너 확인 → Search Events 클릭 → Event Type “UFI Approved International Event” 필터링 후 조회</p> <p>② 한국전시산업진흥회 국제인증 : 전시회 정보포털 소알라 접속(showala.com) → 전시회 찾기 → 인증구분 “AKEI 국제인증” 필터링 후 조회</p>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가등록비, 부스임차료, 부스설치비(디자인비 포함), 추가장치비, 전시 물품(샘플) 편도 및 왕복 운송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국내개최 국제전시회는 운송비 지원 불가 - 전시회 주최사의 공식 마케팅 서비스(전시회 디렉토리/카탈로그 기업 안내 게재, 특별관(부스위치) 선점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자산성 제품(프로모션 아이템 등), 추가광고(TV/온라인 홍보 등) 지원불가 - 전시회 참가에 필요한 통역, 안내요원, 바이어 섭외 관련 서비스 비용 ○ 해외에서 개최되는 상담회/시연회/설명회/세미나/글로벌 마켓 진출 행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소임차비, 장치비 - 바이어 초청 왕복 항공임(이코노미) |
|------------------|--|

| | |
|----------|--|
| 정산 불가 항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이어 숙박비(단일 지역당 최대 3박, 1박당 25만원 한도) - 행사 개최에 필요한 통역, 안내요원, 참가자 섭외 관련 서비스 비용 - 연사료 및 연사초청비(왕복 이코노미 항공임 및 동일 지역당 최대 3박(1박당 25만원 한도)의 숙박비) ○ 온라인 국제전시회 참가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프라인 전시회가 온라인 개최로 전환된 경우에 한하여 전시회 비용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UFI 또는 한국전시산업진흥회로부터 전시회인증 받은 온라인전시회는 오프라인 전시회가 전환된 경우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지원가능 - 오프라인 전시회 지원항목(참가등록비, 부스임차료, 부스설치비 등)에 준하는 참가등록비 및 콘텐츠* 제작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VR전시회 온라인부스(콘텐츠) 제작비는 부스임차료 및 설치비와 치환되므로 지원가능 ○ 국내에서 해외 바이어를 초청하여 개최되는 상담회/시연회/설명회/세미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소임차비, 장치비 - 바이어 초청 왕복 항공임(이코노미) - 바이어 숙박비 (최대 3박, 1박당 25만원 한도) - 행사 개최에 필요한 통역, 안내요원, 참가자 섭외 관련 서비스 비용 - 연사료 및 연사초청비(이코노미 항공임 및 동일 지역당 최대 3박의 숙박비(1박당 25만원 한도)) ○ 해외전시회 사전·사후 마케팅 대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전시회 참가 시 사전·사후 홍보 마케팅을 통한 바이어 발굴 마케팅 비용 ○ 세일즈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지기업 또는 전문가 매칭을 통한 마케팅 및 영업 업무 대행 서비스비 ○ 해외영업에 필요한 시장조사 활동 |
|----------|--|

| | |
|-------|--|
| | <p>취소 수수료, 현지 통신비, 홍보비, 인쇄비, 자산성(단, 전기, 수도, 가스, 와이파이와 같은 유트리티 비용 지원 가능) 제품의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FI 및 한국전시산업진흥회 미인증 국내개최 국제전시회의 경우 ◦ 전시회 개최기간이 협약기간 외 발생한 경우 |
| 추가 증빙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시회 참가 증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시회 부스임차확인서류(계약서 또는 참가확인서) - 참가 결과보고서(참가증빙사진 필수 첨부) [별지 제5-1호 참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스 전면에 '업체명'이 아닌 '브랜드명'이 포함된 경우, 해당 업체의 브랜드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추가 증빙 필수 - 해외바이어 상담일지 [별지 제2호 참조] ◦ 바이어, 연사 초청 관련 증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이어, 연사의 명함 및 신분증(여권) 사본 - 바이어 및 연사 명의의 e-ticket, 항공임 영수증 - 바이어 및 연사 명의의 숙박 영수증 ◦ 세일즈랩 서비스 관련 증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일즈랩이 대행한 업무의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월별 활동 보고서 - 세일즈랩의 경력, 자격 등을 명시한 이력서(profile) ◦ 운송비 관련 증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송비 내역 인보이스(견적서), 세금계산서, B/L, 수출신고필증*, 패킹 리스트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품(샘플)운송비는 통관 시 거래구분 85번, 92번일 경우 지원되며 수출품목으로 분류될 경우 운송비 지원 불가 |

자. 법무·세무·회계컨설팅

| | |
|------------------|---|
| 정산 기능 서비스 및 지원항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 및 해외 진출에 필요한 법무, 세무, 회계 컨설팅 |
| 정산 불가 항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컨설팅 활동으로 볼 수 없는 직접비용(인증비, 심사비, 소송비 등) |
| 추가 증빙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컨설팅 보고서 등 서비스 수행성과물 |

차. 디자인개발

- 총괄수행기관인 한국디자인진흥원이 디자인 개발 분야 수행기관으로 선정한 수행기관만 디자인 개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동 분야 총괄수행기관인 한국디자인진흥원의 정산기준 및 권장표준단가를 따른다. [별지 제3호 참조]
- 검수결과 부적정 시 금액 조정(부분정산)이 있을 수 있다.
- KOTRA 운영기관에 대한 정산 신청 전에 한국디자인진흥원의 검수를 필하여야 한다.
- 정산기준 및 권장표준단가는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별도 공지한다.
(수출바우처.com 공지사항, 자료실)

카. 홍보동영상

- 총괄수행기관인 한국디자인진흥원이 홍보동영상 분야 수행기관으로 선정한 수행기관만 홍보동영상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동 분야 총괄수행기관인 한국디자인진흥원의 정산기준 및 권장표준단가를 따른다. [별지 제3호 참조]
- 검수결과 부적정 시 금액 조정(부분정산)이 있을 수 있다.
- 수행기관은 KOTRA 운영기관에 대한 정산 신청 전에 한국디자인진흥원의 검수를 필하여야 한다.
- 정산기준 및 권장표준단가는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별도 공지한다.
(수출바우처.com 공지사항, 자료실)

타. 해외규격인증

- 해외규격인증 분야 총괄수행기관인 한국시험기술원이 해외규격인증분야 수행기관으로 선정한 수행기관만이 해외규격인증 취득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의 정산기준 및 권장표준단가를 따른다.
- 수행기관은 KOTRA 운영기관에 대한 정산 신청 전에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의 검수를 필하여야 한다.
- 정산기준 및 권장표준단가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서 별도 공지한다.
(수출바우처.com 공지사항, 자료실)

파. 국제운송

- 국제운송 분야 총괄수행기관인 한국국제물류협회가 국제운송 분야 수행기관으로 선정한 수행기관만이 국제운송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증빙서류 상 발송일이 참여기업 협약기간 내에 있는 경우만 정산 가능하며, 협약기간 누계 2천만원(매칭액 기준) 이내에서 정산이 가능하다.
- 수행기관은 KOTRA 운영기관에 대한 정산 신청 전에 국제물류협회의 검수를 필히여야 한다.

| | |
|------------------|--|
| 정산 가능 서비스 및 지원항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통) 수출자가 부담*하는 국제운송료(해운·항공)* 및 보험료 [별지 제9호 참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코텀즈 거래조건 구분 상 C조건(CFR·CIF·CPT·CIP), D조건(DAP·DPU·DDP)이 해당 * 운송료에 포함된 유류할증료, 보안할증료, 저유황할증료 정산 가능 ○ 유상거래 샘플운송 ○ 아마존 FBA 등 B2C, B2B 플랫폼 입점 위한 운송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운임, 취급수수료(위험물 취급수수료 등) 및 도착국 발생비용 - 수출 물품 제조에 필요한 원부자재 수입 물류비 - 거래서류 상 자사의 현지법인(생산법인) 또는 지사로의 원부자재(중간재) 수출 물류비 <p>* 운영기관 요청 시, 수입자가 참여기업의 현지법인 또는 지사가 아님을 입증하는 서류 제출 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 수입세 등 국내 및 도착국에서 발생하는 각종 제세공과금 일체 - 각종 문서 송달비용 - 출발국이 한국이 아닌 해외 국가간(해외→해외) 운송비용 - 현지 내륙운송 비용 - 급행료 등 불법적 행위에 동원되는 비용 일체, 기타 증빙이 부실한 지출 항목 등 - 무상거래 샘플운송 <p>☞ 코로나19대응 화상상담 연계 샘플운송 서비스 활용 요망</p> |
| 정산 불가 항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운임, 취급수수료(위험물 취급수수료 등) 및 도착국 발생비용 - 수출 물품 제조에 필요한 원부자재 수입 물류비 - 거래서류 상 자사의 현지법인(생산법인) 또는 지사로의 원부자재(중간재) 수출 물류비 <p>* 운영기관 요청 시, 수입자가 참여기업의 현지법인 또는 지사가 아님을 입증하는 서류 제출 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 수입세 등 국내 및 도착국에서 발생하는 각종 제세공과금 일체 - 각종 문서 송달비용 - 출발국이 한국이 아닌 해외 국가간(해외→해외) 운송비용 - 현지 내륙운송 비용 - 급행료 등 불법적 행위에 동원되는 비용 일체, 기타 증빙이 부실한 지출 항목 등 - 무상거래 샘플운송 <p>☞ 코로나19대응 화상상담 연계 샘플운송 서비스 활용 요망</p> |
| 추가 증빙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통관 관련 증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보이스 (C/I 또는 P/I) - 선하증권 (B/L) - 패킹리스트 (P/L)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행 관련 증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행기관 발급 세금계산서 - 수행사·선사 발급 운송견적서, 영수증 - 부정수급 예방 서약서 (수행기관·참여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별지 제10호 참조] ▶ 제출서류 상 화주(수출자), 수입자 등이 모두 일치해야 유효 증빙으로 인정 ▶ 서류 상 화주는 참여기업, 수입자는 현지거래선(원부자재(중간재)일 경우 자사법인 또는 지사 불가)이어야 함 |
|--|--|

VII. 참여기업의 사후개별정산 관련 지침

1. 적용 범위

- 관리지침에 근거하여 참여기업이 ①해외전시회개별참가 ②해외규격인증 취득 ③해외홍보/광고 ④항공임 비용을 직접 집행한 후 KOTRA 운영기관에 사후개별정산을 요청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2. 유형별 정산 지침

가. 해외전시회 개별 참가

- 관리지침 제25조와 제27조의 2 제2항에 따라, 참여기업이 불가피하게 전시회 비용을 직접 집행해야 하는 경우는 KOTRA 운영기관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협약기간 내 전시회가 종료된 건에 한해 집행 후 정산이 가능하다.
- 특정 세부항목의 정산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KOTRA 운영기관을 통해 사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 | |
|----------|--|
| 정산 가능 항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시회 참가 지원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UFI 및 한국전시산업진흥회 국제인증 전시회 여부 확인 경로 * UFI 인증전시회(x), 한국전시산업진흥회 인증전시회(x) → 국제인증이여야 함 ① UFI 국제인증 : ufi.org 접속 → 메인화면 하단 “Events Approved by UFI being held today” 배너 확인 → Search Events 클릭 → Event Type “UFI Approved International Event” 필터링 후 조회 ② 한국전시산업진흥회 국제인증 : 전시회 정보포털 쇼알라 접속(showala.com) → 전시회 찾기 → 인증구분 “AKEI 국제인증” 필터링 후 조회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가등록비 - 부스임차료 - 부스설치비(디자인비 포함) - 추가 장치비 - 전시 물품(샘플) 편도 및 왕복 운송비* * 단, 국내개최 국제전시회는 운송비 지원 불가 - 전시회 주최사의 공식 마케팅 서비스(전시회 디렉토리/카탈로그 기업 안내 게재, 특별관(부스위치) 선점 등) * 단, 자산성 제품(프로모션 아이템 등), 추가광고(TV/온라인 홍보 등), 바이어 매칭 서비스 비용 등은 지원 불가 온라인 국제전시회 참가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프라인 전시회가 온라인 개최로 전환된 경우에 |
| | |

| | |
|---------------|---|
| 한하여 전시회 비용 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UFI 또는 한국전시산업진흥회로부터 전시회인증 받은 온라인전시회는 오프라인 전시회가 전환된 경우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지원가능 - 오프라인 전시회 지원항목(참가등록비, 부스임차료, 부스설치비 등)에 준하는 참가등록비 및 콘텐츠* 제작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VR전시회 온라인부스콘텐츠 제작비는 부스임차료 및 설치비와 차별화므로 지원가능 - 동일 전시회로 타 정부부처, 공공기관 등의 금전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부 지원 포함)을 받은 경우 정산 불가 * 정부부처, 공공기관 등에서 주관, 주최, 인솔하는 공동관 참가전시회의 경우 해당기관으로부터 금전지원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는 공문을 받아 제출 - 현지에서의 교통운임(핸드캐리 포함), 현지 체재비, 통역비, 전시회 참가 취소 수수료, 현지 통신비, 홍보비, 인쇄비, 자산성 제품(단 전기, 수도, 가스, 와이파이와 같은 유틸리티 비용 지원 가능)의 경우 - UFI 및 한국전시산업진흥회 미인증 국내개최 국제전시회의 경우 - 전시회 개최기간이 협약기간 외 발생한 경우 - 참가신청 수수료(민간 에이전트 협단체를 통해 참가할 경우 발생하는 수수료) |
| 정산 불가 항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시회 참가 직접경비 납부 증빙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기업 서약서[별지 제4호 참조] - 인보이스 - 납입증빙(외환송금 시 환율 명기) - 전시회 부스임차확인서류(계약서 또는 참가확인서) - 참가 결과보고서(참가증빙사진 필수 첨부)[별지 제5-2호 참조] - 해외바이어 상담일지 [별지 제2호 참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스 전면에 ‘업체명’이 아닌 ‘브랜드명’이 포함된 경우, 해당 업체의 브랜드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추가 증빙 필수 운송비 관련 증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송비 내역 인보이스(견적서), 세금계산서, B/L, 수출신고필증*, 패킹 리스트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품(샘플)운송비는 통관 시 거래구분 85번, 92번일 경우 지원되며 수출품목으로 분류될 경우 운송비 지원 불가 - 대행기관(非수행기관)을 이용한 경우 추가 증빙 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시회 주최사와 대행기관 간 계약서, 대행기관의 참가비 청구서, 참여기업의 입금증 |

나. 해외규격인증 취득

- 관리지침 제25조와 제27조의 2 제1항에 따라 정산하며, 세부 기준은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의 별도 공지를 따른다. (수출바우처.com 공지사항, 자료실)
- 특정 세부항목의 정산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을 통해 사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다. 해외홍보/광고 지원

- 관리지침 제25조와 제27조의 2 제3항에 따라, 참여기업이 불가피하게 홍보/광고를 직접 진행해야 하는 경우는 KOTRA 운영기관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협약기간 내 홍보/광고가 완료된 건에 한해 집행 후 정산이 가능하다.
- 특정 세부항목의 정산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KOTRA 운영기관을 통해 사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 | |
|----------|---|
| 정산 가능 항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외 TV·신문·잡지·PPL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외 TV, 신문, 전문 잡지, 경기간행물 등에 광고 게재 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외 전문 잡지 및 간행물의 ISSN(국제표준연속간행물번호)가 등록된 경우 지원 해외 고객 및 시청자를 대상으로 한 공중파 및 웹드라마 활용 PPL 비용 SNS 및 웹사이트 배너광고, 온라인 B2C, B2B 사이트 등록 등 |
| 정산 불가 항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 매체 광고(한국어 광고 등) 관련 홍보에 수반되는 동영상 및 콘텐츠 제작 전단지(단순 인쇄), 유사 신문, 정식 등록되지 않거나 개별 친목도모 등의 목적으로 개설된 웹사이트 광고 사업자 미등록 및 정식 계약체결이 불가한 현지 개인 SNS 플랫폼 및 인플루언서 홍보 오프라인 마케팅 및 홍보를 위한 임차료, 장치비 등 기타 홍보에 수반되는 물품 운송비 등 협약기간 외 홍보/광고를 수행하는 경우 참여기업 직접 수행이 아닌 대행기관 이용 시 정산 불가 |
| 증빙 서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결과보고서[별지 제8-2호 참조] 인보이스(Invoice) 및 입금증(송금증) 등 지출내역 서비스 상세내역 및 계약기간이 명시된 홍보/광고 계약서 또는 홍보/광고신청서* <p>* 홍보/광고신청서가 없는 경우 신청확인 화면 / 관리자계정 화면 캡처 등으로 대체</p> |

| | |
|--|---|
| | <p>기능(단, 해당 캡처화면에 서비스 상세내역 및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홍보/광고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영상녹화물, SNS 및 신문잡지 홍보결과 사본 등 실제 자료 등 운영기관이 별도 요청하는 증빙 |
|--|---|

라. 항공임 지원

- 관리지침 제25조와 제27조의 2 제4항에 따라, [전시회/행사/해외영업지원] 분야에 등록된 전시회 참가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또는 해외전시회에 개별 참여하고 이를 바우처로 사후정산 처리한 경우 소요된 참여기업의 해외출장 항공임은 정산이 가능하다.
- 특정 세부항목의 정산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KOTRA 운영기관을 통해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 운영기관의 항공임 사후정산 검토는 i) [전시회/행사/해외영업지원] 분야에 등록된 전시회 참가 서비스 또는 ii) 해외전시회 개별참여 정산이 완료(정산입금여부등록 단계)된 이후 가능하다.³⁾

| | |
|----------|--|
| 정산 가능 항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바우처를 활용하여 참가한 해외전시회 연계 해외 출장만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행기관 활용) [전시회/행사/해외영업지원] 메뉴판에 등록된 전시회 메뉴 이용을 위해 소요된 왕복 국제항공임 (수행기관 미활용) 해외전시회 참여건에 대한 사후정산을 기승인받은 기업이 전시회 참여를 위해 지출한 왕복 국제항공임 협약기간 내 총 1회, 최대 2인의 이코노미석 항공임만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용등급) 이코노미석(Y클래스 이하)이 원칙이나 구매 후 자비(마일리지 포함) 업그레이드 허용 (대상직원) 참여기업 대표 또는 해외영업에 필요한 직원에 한함 (허용기간) 전시회 개최일 및 폐막일 전후 2일 이내 출도착(현지시각 기준) 항공권만 인정 (경유여부) 직항노선이 원칙이며, 해당노선이 없거나 충분한 사유(예시: 불가항력에 의한 대체노선 이용)가 인정되는 사례만 경유편* 인정 |
|----------|--|

3) 참여기업은 전시회 참가서비스(사후정산 포함)에 대한 정산요청 이후, 바우처 시스템 상에서 항공임 사후정산을 신청할 수 있다.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시회 개최국 외 제3의 경유지 방문을 포함한 항공편은 불인정 |
| 정산 불가 항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부처, 지자체, 유관기관 등으로부터 전시회 비용 또는 항공임을 지원받은 경우 (일부 지원 포함) - 전시회 부스참가가 아닌 시전후속 활동 또는 단순 참관을 위해 시행한 출장 - 전시회 개최지역으로의 직항노선이 있는 경우 경유 항공임 - 경유 항공편의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단순 환승으로 인정 불가한 ①경유지 24시간 초과 체류, ②관광지 경유, ③3회 이상의 과도한 환승 여정 등 - 수화물·기내식 추가비용, 유아·반려동물 동반운임, 여행사 수수료(부가수수료, 취급수수료 등), 취소·변경수수료 등 - 숙박비, 식비, 일비 등 기타 출장비 - 육로·해상운임 및 국내구간 운임 - 국내항공임 및 편도항공임 등 - 협약기간 외에 출장을 시행한 경우 - 출발편 출발지가 한국이 아닌 경우 - 도착편 도착지가 한국이 아닌 경우 |
| 증빙 서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기업 왕복 국제항공임 지원 신청서 및 서약서 [별지 제6호 참조] - 구매영수증(카드결제전표 또는 세금계산서·입금증) - 여정확인서(e티켓)* - 탑승권 사본** - 탑승자 4대보험 납입증명서(고용, 산재, 국민연금, 건강보험 중 택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정확인서와 탑승권 간 예약번호 또는 항공권번호가 일치해야 인정 (탑승권 분실 또는 훼손 시 정산 불가) ** 탑승자 성명, 날짜, 좌석등급, 목적지 등이 확인되어야 하며, 예약내역에 연결편이 있는 경우 전체여정에 대한 탑승권 사본 일체 제출 |

3. 유의사항

- 참여기업의 해외법인, 해외지사를 통해 비용 대납 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한다.
 - 해외법인 및 해외지사와의 관계증명서류(현지 법인등록증, 주거래은행의 해외직접투자신고서 및 주거래은행의 해외투자계획서)
 - 해외법인 및 지사에서 지급한 서류 추가 제출
- ※ 단, 참여기업이 직접 수행해야 하며 해외법인, 해외지사에서 수행한 경우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는다.

- 해외 송금 시 적용환율 필수 기재*
 - 송금증에 적용환율이 표기된 경우 : 표기환율 적용
 - 송금증에 적용환율이 표기돼 있지 않은 경우 : 송금당일 하나은행 외환 포털 내 '최초'고시회차 매매기준율 캡쳐화면 필수 제출
 - * 카드 지출 시에는 매출전표에 기재된 환율 적용
- 카드결제, 계좌이체 등 지급수단*에 맞는 지출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 지급수단으로 무통장입금, 현금지급 인정 불가
- 해외 현지 발생 세금의 정산
 - 참여기업이 비용을 직접 집행함에 있어 부가가치세 등 현지 세금이 발생한 경우 정산할 수 있다. 단, 현지법에 따라 해당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경우는 정산 할 수 없으며, 참여기업은 정산 요청하는 해외 납부 세금에 대해 환급받지 않았다는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별지 제7-2호 참조]